

연구비관리지침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	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6조(연구수당) ① 연구수당 예산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연구개발사업: 지원기관 인정기준 2. 산업체: 총연구비의 50% 이내 (컨설팅(자문) 제외) 3. 포스코: 교수인건비 반영액의 50% 이내 	<p>제16조(연구수당) ① 연구수당 예산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연구개발사업: 지원기관 인정기준 2. 산업체: 총연구비의 50% 이내 (컨설팅(자문) 제외)로 하되, 간접비 반영비율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 3. 포스코: 교수인건비 반영액의 50% 이내 	<p>2020.6.1.일 부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3조(연구비 잔액처리)</p> <p>② 기타(POSCO, 산업체 등 비정산 과제)의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국가 기관</th> <th>산업 체</th> <th>POS CO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자체연구 개발과제</td> <td>반납</td> <td>집행 잔액 90%</td> <td>인건 비잔액 80%</td> <td>기초, 선 행 연 구 과 제 수행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발전 기금 적립</td> <td rowspan="2">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액 전액</td> <td rowspan="2">집행 잔액 10%</td> <td>인건 비잔액 20%</td> <td rowspan="2">연구 활동 촉진, 인프라 지원 등</td> </tr> <tr> <td>직접 비잔액 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	국가 기관	산업 체	POS CO	비고	자체연구 개발과제	반납	집행 잔액 90%	인건 비잔액 80%	기초, 선 행 연 구 과 제 수행	연구발전 기금 적립	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액 전액	집행 잔액 10%	인건 비잔액 20%	연구 활동 촉진, 인프라 지원 등	직접 비잔액 100%	<p>제23조(연구비 잔액처리)</p> <p>② 기타(POSCO, 산업체 등 비정산 과제)의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국가 기관</th> <th>산업 체</th> <th>POS CO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구개발 과제</td> <td>반납</td> <td>집행 잔액 90%</td> <td>인건 비잔액 80%</td> <td>기초, 선 행 연 구 과 제 수행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발전 기금 활용</td> <td rowspan="2">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액 전액</td> <td rowspan="2">집행 잔액 10%</td> <td>인건 비잔액 20%</td> <td rowspan="2">연구 활동 촉진, 인프라 지원 등</td> </tr> <tr> <td>직접 비잔액 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국가 기관	산업 체	POS CO	비고	연구개발 과제	반납	집행 잔액 90%	인건 비잔액 80%	기초, 선 행 연 구 과 제 수행	연구발전 기금 활용	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액 전액	집행 잔액 10%	인건 비잔액 20%	연구 활동 촉진, 인프라 지원 등	직접 비잔액 100%
구분	국가 기관		산업 체	POS CO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체연구 개발과제	반납	집행 잔액 90%	인건 비잔액 80%	기초, 선 행 연 구 과 제 수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발전 기금 적립	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액 전액	집행 잔액 10%	인건 비잔액 20%	연구 활동 촉진, 인프라 지원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직접 비잔액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국가 기관	산업 체	POS CO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개발 과제	반납	집행 잔액 90%	인건 비잔액 80%	기초, 선 행 연 구 과 제 수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발전 기금 활용	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액 전액	집행 잔액 10%	인건 비잔액 20%	연구 활동 촉진, 인프라 지원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직접 비잔액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③ 연구부서에서는 잔액적립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, 해당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“자체연구개발과제 활용신청서”를 연구지원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③ 연구부서에서는 잔액처리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, 해당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“연구개발과제 활용신청서”를 연구지원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